

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5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박지원 · 김남희  
이주희 · 김 현 · 안호영  
장철민 · 김재원 · 전용기  
한준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보험업법」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, 상호회사,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「보험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.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‘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’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,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보험대리점이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여행업자 및 「의료 해

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험대리점(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·질병 등의 위험을 보상해주는 보험의 계약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)이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등록 및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